

2025년 제1차 한국관광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일반, 장애인] 채용공고

1. 채용개요

- 채용형태: 체험형 청년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모집부문 등

모집부문		근무장소	인원(명)	비고
일반	본사	본사(원주)	22	채용 후 부서배치 예정
	제주지사	제주지사(제주)	1	
	고졸인재	서울센터(서울)	2	
일반 소계			25	
장애인		재택 및 본사(원주)	10	희망자 수요 등 고려 부서배치 예정
총계			35	

- ※ 모집부문 간 중복 지원 불가(중복 지원 사실 확인 시 지원한 모든 부문 불합격 처리)
- ※ 부문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 숙소를 제공하지 않음
- ※ 입사예정일 및 직무교육 진행 일자에는 근무장소 무관 전원 본사 소집(예정)

입사예정일: 2025. 7. 15.(화) ※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기간: 2025. 7. 15.~2026. 1. 14. [6개월]

근무조건 ※ 기타 근무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 내규에 따름

- (일반 부문)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월 2,115,080원(4대보험 포함)
- (장애인 부문)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 월 1,062,600원(4대보험 포함)

주요업무: 직무기술서 참조(붙임1)

청년인턴 수료자 우대사항

- 계약기간 근무 완료할 경우, 한국관광공사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우대
- 계약기간 근무 완료 시 수료증 발급(1개월 이상 근무 시 경력증명서 발급)

2.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 모집부문에 관계없이 필수 충족 필요

-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입사예정일: '25. 7. 15.(화))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으로서, 입사예정일 기준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모집부문별 지원자격

구 분	세부내용
[일반(본사, 제주지사)]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점 이상의 TOEIC 성적 보유자 ※ 필기시험에 한함(Speaking 시험 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구 2·3급) 응시자 적용기준: TOEIC 청해 외 성적×200%
[일반(고졸인재)] 부문	<p>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점 이상의 TOEIC 성적 보유자 ※ 필기시험에 한함(Speaking 시험 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구 2·3급) 응시자 적용기준: TOEIC 청해 외 성적×200% ■ 고교졸업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중퇴자, 대학 재학·휴학자 포함)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및 졸업학년 졸업학기(2학기, 조기졸업자의 경우 1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제외,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
[장애인]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외국어 점수 인정 요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입사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이 지나지 않은, 국내 시험 주관처의 공식적인 조회 및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단,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일 경우 응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career.gosi.go.kr)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 국내 시험 주관처의 공식적인 조회 및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국외 응시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 지원자격은 본 공고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본 공고의 [6. 제출서류]를 확인 후 작성 요망. 추후 증빙서류로 증명 불가능 시 불합격 등 불이익 처분 가능)

□ **채용제외대상자** ※ 채용제외대상자가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 해지

- 한국관광공사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있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또는 채용시행세칙 등에 의거한 부정행위자(붙임2 참조)

3. 우대사항

유형	대상	적용대상	가산점
사회형평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기재된 법정가산율에 따라 가점 적용)	만점의 10% 또는 5%
	장애인	[일반] 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만점의 5%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만점의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만점의 5%
	자립준비청년	공고일 기준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만점의 5%
	이전지역 (강원)인재	[붙임3] 기준에 따른 이전지역(강원)인재 해당자	만점의 5%

유형	대상	적용대상	가산점
일반가점	복수 외국어 능통자	[일반] 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 ○ 아래 어학성적기준 중 하나 충족 - 일어: JPT 600점 이상, JLPT N2 이상(택1) - 중어: 新 HSK 4급 210점 이상 - 노어, 독어, 불어, 서어: FLEX 듣기/읽기 540점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구 2·3급) 응시자 적용기준: JPT 청해 외 성적×200%	만점의 3%
	외국어(영어) 우수자	[장애인] 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 ■ 600점 이상의 TOEIC 성적 보유자 ※ 필기시험에 한함(Speaking 시험 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구 2·3급) 응시자 적용기준: TOEIC 청해 외 성적×200%	만점의 3%

※ 외국어 점수 인정 요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입사에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이 지나지 않은, 국내 시험 주관처의 공식적인 조회 및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단,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일 경우 응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career.gosi.go.kr)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 국내 시험 주관처의 공식적인 조회 및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국외 응시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우대사항은 본 공고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본 공고의 [6. 제출서류]를 확인 후 작성 요망. 추후 증빙서류로 증명 불가능 시 불합격 등 불이익 처분 가능)

우대사항(가산점) 적용 기준

- (대상전형) 가산점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단,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은 관련 법률 및 정부 지침에 따름
 - 전체 전형 단계 우대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해당 채용부문 전형 시 가점을 운영하지 않음(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 등
- (적용방법) 가점유형별(사회형평, 일반) 가장 유리한 1개씩 적용
- (유의사항) 우대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적격 증빙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채용전형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일반] 모집부문 ■ 적부심사 ■ 지원서 기반 평가(100점) ■ 우대사항 가점 적용	[장애인] 모집부문 ■ 적부심사 ■ 우대사항 가점 적용	■ 면접평가(100점) ■ 우대사항 가점 적용
부문별 각 3배수 선발		부문별 각 1배수 선발

※ 각 단계별로 전 단계까지의 성적과 관계없이 평가하는 허들방식 적용
 (단,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류전형

- (평가기준) 하기 평가기준에 따른 탈락처리 및 점수 부여

모집부문	항목	배점	점수부여
공통	■ 적부심사 - 필수자격 확인 및 부적격자 탈락처리 - 하기에 해당하는 불성실 기재자 탈락 처리 · 입사지원서 필수 기입 항목 미작성자 · (해당시) 자기소개서 미입력 작성자 · (해당시) 자기소개서 400자 미만 작성자 · (해당시) 지원과 무관한 내용 기입, 글자 수 충족을 위한 특수문자 나열, 동일내용 붙여넣기, 타 기관 지원내용 작성자 등	-	적격/부적격
[일반] 부문	■ 외국어 점수(TOEIC 점수)	최대 100점	TOEIC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 단, 입사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배 사항이 있을 시 해당 내용에 따라 불합격 등 불이익 처분 가능

※ [장애인] 부문 적부심사 결과 적격자는 모두 만점(100점) 부여

- (합격자 선발 기준) 적부심사, 지원서 기반 평가 등을 통한 개인별 득점에 우대사항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

○ 면접전형

- (배점기준) 면접평가(100%)* 및 우대사항 해당자 가점 적용

* (평가기준) 의사소통능력(30%), 공기관심도(30%), 직무경험·역량(20%), 조직적합성(20%)

- (합격자 선발 기준)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합격 최저점수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전형: 합격 최저점수 동점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인 부문 미적용)
3. '우대사항' 기준에 따른 사회형평 가점 해당자(단, 장애인 가점은 위 2호에 해당하므로 제외)
4. 서류전형 고득점자
5. 면접전형 세부 평가항목별 고득점자(하기 평가항목순 적용)
 - 의사소통능력 점수 → 공사 관심도 점수 → 직무경험·역량 점수

5. 전형일정

주요내용	일정	합격자 발표일	비고
채용공고	5. 16.(금)~6. 2.(월) 14:00	-	-
입사지원서 접수	5. 21.(수)~6. 2.(월) 14:00	-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6. 2.(월)~6. 12.(목)	6. 13.(금) 예정	
증빙서류 접수	6. 13.(금)~6. 17.(화) 14:00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전형	6. 26.(목)~6. 27.(금)	7. 8.(화) 예정	본사(원주) 예정
최종입사	7. 15.(화) 예정	-	-

※ 상기 일정 및 세부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제출서류

□ 지원자 공통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사지원서 제출(온라인 접수)

※ 입사지원서 제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서류전형 합격자

- 증빙서류 접수 마감일시까지 아래 증빙서류 제출(온라인 접수 예정)

구분	부문/대상	제출서류
부문별 지원자격	일반(본사, 제주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성적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 (career.gosi.kr)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일반(고졸인재)	<p>아래 ①~②자료 모두 제출</p> <p>① 외국어 성적표 사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 (career.gosi.kr)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p>② 고교졸업예정 증명서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p> <p>※ 검정고시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p>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증명서 원본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포함)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공사를 제출처로 발급받은 것만 인정
	장애인	<p>[일반] 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증명서 원본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포함)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p>*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p>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 우대사항 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립준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혹은 동 자립수당의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p>※ 위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 증빙서류 등 제출</p>
	이전지역 (강원)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복수 외국어 능통자	<p>[일반] 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성적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 (career.gosi.kr)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외국어(영어) 우수자	<p>[장애인] 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성적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 (career.gosi.kr)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복무 관련 상한 연령 연장 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증빙서류 관련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내** 유효 발급분 제출 원칙
- 불이익이 없도록 전형일정 상의 증빙서류 접수 마감일을 참고하여 준비
- 지원자격, 우대사항은 공사가 제시한 적격 증빙서류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증빙서류를 통해 지원자격, 우대사항 해당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진위여부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입사지원서와 증빙서류 간 내용 불일치, 증빙서류 미비 및 오제출,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경우 불합격 등 불이익 처분 가능하며 이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며,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료검증 및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서 허위작성(입력사항과 제출자료 불일치 포함) 또는 증빙 위변조 등 채용비리가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입사 이후라도 면직 처리 될 수 있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7. 기타 및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공사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블라인드 채용 관련 입사지원서 작성 안내

- **사진, 성별, 나이,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기재 금지**
 - * 단, 면접전형 지원자 신분확인을 위해 “출생월일” 기재
- e-mail 기재 시 **특정 학교명 등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이용 금지**
- 입사지원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발견 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처분 가능**

□ 입사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의 접수는 채용 사이트(knto.recruitlab.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에 한합니다. (지원서 접수기간 : ’25. 5. 21.(수) 14:00~6. 2.(월) 14:00 마감)
- 반드시 공고문, 지원서의 작성요령 및 FAQ를 숙지하시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은 접속량 증가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일 및 마감시간에 임박한 접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접수 마감시간 연장 없음).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별도 기준시점을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사 지원 마감일(2025. 6. 2.)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반드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귀속됩니다.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내용의 수정과 입사지원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최종제출 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 착오,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불합격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 본인 확인

- 면접전형 참석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상의 정보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다를 경우 또는 지참한 신분증이 적격 신분증이 아닌 경우,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해당 전형 당일 유효기간 내에 있고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여권(신여권의 경우 외교부에서 발급한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지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에 한해 인정(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응시 불가)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전형 당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지원자 편의 제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면접전형 응시 편의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자는 [붙임4]를 참조하시어 신청 바랍니다.(증빙접수 시 별도 안내 예정)
- 편의 제공 신청자는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검토 후 승인여부는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허위 기재 및 채용비리의 처리

- 입사지원서의 허위작성(증빙 미제출, 입력사항과 제출자료 불일치 포함) 또는 증빙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부당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견되면 부정합격자를 불합격 및 채용취소 처리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사 이후에도 관련사항 적발 시 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공사 「채용시행세칙」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거 처리(붙임2)

※ 최종 합격 시 위의 내용과 관련된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필수)

□ 부적격자 처리

- 채용비리 연루자,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부적격자는 채용 과정 또는 채용 이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운영

- 채용비리 발견 또는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등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운영기간은 청년인턴 입사예정일까지입니다.

- 차순위 예비합격자의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입사포기자 및 추가합격자 관련 상황별 조치방법'을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 포기자) 입사포기 의사표현 시점 이후 6시간 내 '입사포기 확인서' 미제출 시, 입사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임용 가능

※ (추가 합격자) 입사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최초 통화 시도 시점으로부터 6시간 동안 연락 불가한 경우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임용 가능

□ 채용서류 반환

- 불합격자에 대한 제출 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법」에 의거 실시됩니다.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5] 양식에 자필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 채용 이의신청 센터 운영

○ 채용 관련 비리·부정행위 및 소명 등을 위한 채용 이의신청 센터를 운영합니다.

- 접수기간: 면접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간
- 접수방법: 이의신청 양식[붙임6]을 작성하여 이메일(insa@knto.or.kr)로 제출
- 처리대상: 채용 관련 부정행위 및 채용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시험출제 평가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등

□ 문의처 등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온라인 채용홈페이지(knto.recruitlab.co.kr)의 '공지사항 및 FAQ'를 확인하신 후,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 자제 요망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

2. 채용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3. 이전지역(강원)인재 정의 1부

4. 장애인 지원자 편의제공 관련 안내 1부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1부

6. 이의신청서 양식 1부

7. 입사지원서의 자기소개서 작성항목(일반 부문) 각 1부. 끝.

붙임1
직무기술서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채용분야	한국관광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분 류 체 계	대분류	02.경영·회계·사무	
			중분류	01. 기획사무	02. 총무·인사
			소분류	03. 마케팅	
			세분류	01.마케팅 전략기획	02. 사무행정
주요사업	○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관광으로 국부를 증진하는 공공기관”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국내 및 지방관광 활성화,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핵심책무	○ 아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업무 수행 - 국내·외 관광마케팅 (세분류 마케팅전략기획의 능력단위 모두 해당) -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직무수행 내용	○ 아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함 - (관광마케팅) 외래관광객을 국내에 유치하고 한국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및 소재개발, 마케팅 콘텐츠 생성 및 공유,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등 -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숙박·음식·쇼핑·교통 여건 개선, 지자체 대상 관광개발 컨설팅, 관광벤처 창업지원, 관광인력 대상 교육훈련 실시, 관광 관련 기초 조사사업 실시 등 - (사무행정) 관광마케팅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수행에 발생하는 제반적인 사무행정, 부서 운영지원, 민원관리 등				
필요지식	○ 마케팅 관련 지식, 상품기획 관련 지식, MICE 기획 관련 지식, 브랜드관리 관련 지식 등				
필요기술	○ 외국어 활용능력, 시장·환경분석 기술,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구축 능력, 스프레드시트 활용능력, 간략한 보고서 작성 능력 등				
직무수행 태도	○ 고객과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창출 의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적극적 태도, 윤리의식 등				
필요자격	○ 채용공고 참조				
직업기초 능력	○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등				

붙임2

채용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조치 근거

□ 인사규정 제12조(채용결격)

제12조(채용결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다.

<개정 2016.4.5./2016.10.31./2017.12.29./2018.7.23./2019.8.20./2021.5.6./2024.9.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삭 제 <2021.5.6>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0. 삭 제 <2021.11.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채용시행세칙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사의 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전형에 응시한 경우
2.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3.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붙임3

이전지역(강원)인재 정의

‘이전지역인재’ 관련 법률 및 정부 지침 등에 따른 기준입니다.
 (‘이전지역(강원)인재’ 관련 사항은 한국관광공사의 이전지역(강원특별자치도)을 적용합니다.)

□ 이전지역(강원)인재

< ‘이전지역(강원)인재’의 개념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가. 이전지역 학교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 학교 등의 본교
- ②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 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이전지역 학교 제외 대상

- ①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②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다. 그 외의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②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p><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p><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p><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p><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p><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p><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p><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붙임4

장애인 지원자 편의제공 관련 안내

□ 편의제공 대상

- 2025년 제1차 한국관광공사 청년인턴(일반, 장애인) 채용 지원자 중,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 장애로 인해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편의제공 신청 방법 및 결과 안내

- 상기 ‘편의제공 대상’ 해당자 중 희망자는,
 - ① 증빙 제출 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기준】 (다음 페이지 참조)에 따라 편의제공 신청
 - ② 별도 안내에 따라 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확인서(해당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공사에서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 등 검토하여 지원 여부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다음 페이지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기준】 을 확인하시어,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신청 가능 내용,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신청(장애유형과 정도가 기재된 진단서 등 징구 가능)
-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로 장애유형 및 정도 등 지원자가 편의제공 기준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확인 불가할 시, 의사진단서 등 보완서류 제출 필요
 - * **의사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 받은 진단서로, **전문의학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증빙서류 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준에 맞지 않는 진단서나 소견서,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은 불인정
 -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이 기재되어, ‘편의제공 대상여부’ 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 (반드시 확인 후 발급)
- 기한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사 지원서 기재 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에는 편의제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 사전 준비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기준(면접전형)】

장애 유형		편의제공 내용
지체 장애	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장 내 이동 지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뇌병변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장 내 이동 지원 ·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시각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 · 면접과제지 축소 제공 (확대독서기 사용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청각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사항 등 서면 제공 · 보조공학기기(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 * 지원자 정보는 누락없이 모두 기재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e-메일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 원본서류에 한해 반환가능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연락처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7

입사지원서의 자기소개서 작성항목(일반 부문)

※ 400자 이상, 600자 미만으로 작성

1.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직무 관련 경험 포함)